

### 서론

최근 들어 흉악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년범죄에 대한 사건이 뉴스에 많이 다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년범죄 사건에서 범죄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소년 중에서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며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만일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소년원에 갈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형량도 비교적 훨씬 적게 받는다. 이로 인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사실 또한 문제가 되며 심지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나타나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최근에 다루어진 촉법소년에 관한 기사나 동영상의 댓글에서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하라”, 는 말이나 “어리다고 봐주지 말라”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들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비판이 거세지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여론이나 반응은 점점 부정적으로 치우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촉법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2022년,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촉법소년 하향 조정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촉법소년의 연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화시설을 늘려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로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24년 4월에는 인천 남동구의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쟁점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긴 시간 동안 이어졌으나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전히 촉법소년 연령대는 10세에서 14세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행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본론

사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소년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하며 처벌이

초점이 아닌 소년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으로 인해 법적 공백이 메워져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교정과 교육 등이 재범 방지에 중요하다고 보는 소년법 특성상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형사 처벌을 늘리게 되는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연령 하향 제도는 범죄소년에게 교화 및 재활의 기회가 부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의 소년 사법제도는 교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의 나라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나라들은 이미 엄벌화하는 방식으로 소년범죄를 다루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바뀌어 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벌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소년은 행위통제 능력과 사물 변별 능력이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성숙한 소년의 발달을 성인 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더욱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 처벌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다면 사회화의 기회가 줄어들어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나아지기 어려우며 재범률을 줄이는 것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무작정 연령 하향의 문제만이 이야기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벌에 초점을 두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연령 하향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커진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부른 결정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말 역시 일리가 있다. 또한 법의 개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기도 하다. 소년들이 처벌과 전과 기록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범죄 소년 중 촉법 소년의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이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형사적 책임과 처벌이 과연 1순위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 또한 중요하지만, 국민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현재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